

2023년도 전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모집 공고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교육훈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1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전남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역 할
 - 공동훈련센터는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 사업기간 : 사업약정 시 ~ 2023. 12. 31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 2022.10.13.(목) 14:00 ~ / 전남RSC 회의실
- * 사업설명회 참석 및 훈련과정일람표 사전제출 기관에 한해 훈련계획서 접수 예정

□ 참여대상

- (공동훈련센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
 -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연인원 최소 600명 이상, 협약기업은 최소 165개 이상이어야 참여가능(10인이상 기업비율 60%이상)

【공동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파트너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파트너훈련기관로 참여 가능
 -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1년 이상 인증**(폴리텍 등 공공직업훈련시설 제외)받은 기관만 참여가능

【파트너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 선정 필수 요건

○ 지역·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훈련과정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과정만 선정·운영

- ① 지역 내 수요가 확인되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과정
- ② 선행 훈련과정 이수 또는 자격증 보유 등을 전제로 참여 가능한 고급훈련과정
- ③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신기술 및 융복합 과정, 미래·전략산업 관련 과정
- ④ 중장년 및 경단녀 등 취약계층 대상 과정
- ⑤ IT·ICT서비스·SW개발, (정보)통신업, 콘텐츠·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 ⑥ 그 외 훈련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

○ NCS 적용 훈련과정

- NCS 능력단위 40%이상 적용. 다만, '능력단위'만으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능력단위요소'를 포함하거나 '능력단위요소'만으로 편성하여도 인정

* (예시) 20시간의 훈련시간을 제시한 능력단위 안에 3개의 능력단위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능력단위요소만으로도 훈련과정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시간 편성 가능

- NCS 능력단위 40%미만으로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과정 인정여부 심사 예정

* 해당 직종의 NCS가 미개발, 협약기업 요구사항 반영 등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

-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
- ②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지역 내 훈련수요나 지역 내 기업의 사업영역 및 주된 직무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협약기업의 근로자 등이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 ④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능력(예: 훈련시설·장비, 훈련과정의 질, 교·강사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 ⑤ 해당 훈련과정의 실시계획서가 부실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
- ⑥ 학습목표, 학습대상자 등이 구분됨에도 하나의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설계된 과정(예: 기초·중급·고급 과정을 한 과정으로 개설)
- ⑦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당해 연도내에 과정의 80%를 이수하지 못하는 훈련과정
- ⑧ 공동훈련센터 선정 신청을 한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생산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훈련 과정[예 : 훈련기관(신청기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협력기업에 판매하고 해당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과정이나,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등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사업주훈련 과정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과정만 적격 처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과정은 부적격 처리 또는 과정계획 수정 요구

※ 서비스 업종 등 타 훈련사업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과정*은 훈련과정 참여 제한

* (예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노인간병인)”, “이·미용”, “각종 조리(요리) 과정”, “제과, 제빵 과정”, “기초 OA 과정(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단순 사무관리 과정)” 등

□ (공동훈련센터) 인프라지원금 및 훈련비용 지원

항 목		공동훈련센터	
인 프 라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비율	80%(인건비), 100%(일반운영비)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4억원 (인건비는 1명당 4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달리 정한 기관의 전담자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 상한액은 5,000만원 * 전담자 활용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체적 으로 결정,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시설·장비비	지원비율	8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 (공동훈련센터 2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특별법설립과 정부출연(지자체50%이상 출연법인 포함),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공동훈련 센터 등 : 연간 운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원 : 연간 15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100분 의 100까지 지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율	100% 범위 내
		지원한도액	연간 1억원
훈련비용 (훈련비 + 숙식비 등)	실 지원수준	실비심사	

□ (파트너훈련기관) 훈련비용만 지원

- 훈련비용의 지원기준은 공동훈련센터와 동일

* 파트너훈련기관은 인프라지원은 없으며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급 받음

□ 지원금 지원기준

○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지원기간별 지원한도액			
				1~6년	7~12년	13년 이후	
인 프 라	운영비	인건비	2억	80%	한도액의 100% (4억)	한도액의 80% (3.2억)	한도액의 80% (3.2억)
		일반운영비	2억	100%			
	프로그램 개발비		1억	100%	한도액의 100% (1억)	한도액의 80% (0.8억)	한도액의 50% (0.5억)
	시설 및 장비비		15억	80%	한도액의 100% (15억)	한도액의 80% (12억)	한도액의 50% (7.5억)
훈련비		실비 심사					

※ 상기 지원기준은 한도와 비율을 설정한 것이며 예산액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 등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의 지원비율이 100%인 기관(대응투자금 면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 인프라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사항('22년 하반기 고시 및 규칙 개정 예정)

지원항목		지원기간별 지원한도(7~12년)				변경내역
		변경 전 (~ '22)		변경 후 ('23 ~)		
운영비	인건비	2억	80% (4억)	2억	80%	-
	일반운영비	1억		2억	(3.2억)	1억 증가
프로그램 개발비		2억		1억	80% (0.8억)	1억 감소

※ '23년도 인프라 지원금 예산액이 동결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년도 신청규모와 유사한 수준(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신청 요망

4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지역인자위에서 공동훈련센터 등 선정공고→사업설명회 개최 →서류심사→현장(인터뷰)심사→인자위 심의·의결→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심의위원회 최종심의→사업약정체결 순으로 진행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공동훈련센터 모집·선정 공고	10.07(금)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유관기관 /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
공동훈련센터 모집설명회 개최	10.13(목)	선정과정, 참여조건, 지원사항, 훈련계획서 작성 방법 및 일정 등 안내, 질의응답 등(인자위) ※ 장소 : 전남RSC 회의실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서 접수	10.28(금)	이메일 및 USB, 훈련계획서A·B권 책자 10부 제출
1차 서류심사	10.31~11.01	훈련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통한 정성평가 실시
2차 현장심사	11.02~03	현장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정량평가 실시
수정훈련계획서 제출	11.04(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계획서 수정·보완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의결	~11.18(금)	심사결과에 대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의결
전남지역 인력양성계획서 제출	11.25(금)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서 및 전남인자위 훈련계획서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최종심사	11~12월	공동훈련센터별 서면검토 및 인터뷰 심사(집체) 실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12.15(목)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회 개최(공단본부)
사업약정체결 및 훈련실시	'23. 1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훈련센터 간 약정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교부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jnrsc.or.kr) 『공지사항』 ‘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참조

○ 신청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 사전제출자료 : 훈련과정 일람표, 시설장비현황 목록
 - 2022. 10. 21.(금), 18:00까지 이메일(jnhrd@jnrsc.or.kr) 제출
- 훈련계획서 등 관련자료 : 2022. 10. 28.(금),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훈 련 계 획 서 제 출 서 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신청서 원본(직인날인) 공문 제출 2.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계획서 A, B권 각 10부 3. 인프라지원금 신청내역 4. 훈련비용 신청내역 및 훈련비 단가 세부내역 5. 시설장비현황 목록양식(기존장비 및 신규포함) 6. 2023년 훈련과정 일람표 7. 2023년도 강사 경력산정 근거자료 8. 훈련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9. <u>1 ~ 8번</u> 서류가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 |
|--|

□ 접수·문의처

○ 담당자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광훈 선임연구원

(☎ 061-273-0990 / 070-4285-6963, E-mail : jnhrd@jnrsc.or.kr)

○ 주 소 : (58566)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B/D 6층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심사결과는 신청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훈련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훈련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훈련계획서의 내용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동훈련센터는 사업계획 작성 시 HRD-Net입력을 병행하고, HRD-Net 입력 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HRD-Net 입력일정은 별도 통지)
- 공동훈련센터는 사업계획 전산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 시 노트북, 인터넷 등 준비 필요 (현장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승인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별도 통지)
- 사업신청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04. 26.)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첨부

- [★] 2023년도 지산맞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 선정계획
- [붙임1] 2023년도 지산맞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
- [붙임2] 2023년도 지산맞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붙임3] 인프라지원금 신청내역
- [붙임4] 훈련비용 신청내역 및 훈련비 단가 세부내역
- [붙임5] 시설장비현황 목록양식(기존장비 및 신규포함)
- [붙임6] 2023년 훈련과정 일람표
- [붙임7] 2023년도 강사 경력산정 근거자료
- [참고용1] NCS 능력단위 목록_22년고시
- [참고용2]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 [참고용3] NCS(1,032)-KECO 연계표
- [참고용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전문(2021.04.26.)